이슈리포트 <정보인권> 2021-11 (통권 제12호)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서문 ····· 3
성소수자 노출과 차별 ····· 7
외국인과 이주민 차별과 배제 ····· 12
방역 정책에서 추적 및 집단 관리의 문제 ····· 17
홈리스 차별과 배제 ····· 22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과 참가자 추적 ····· 28
과잉 범죄화를 촉진하는 디지털 추적 ····· 33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3층
전화 02)701-7687, 이메일 idr.sec@gmail.com
홈페이지 http://idr.jinbo.net

인권재단 사람 이 보고서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2021-11 (통권 제12호)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발행인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이영음)
발행일 : 2021년 11월 15일

♣ 일시후원/후원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http://idr.jinbo.net

서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적인 건강권의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인권 침해가 발생해 온 현실에 주목해 왔다.

한국의 K-방역 정책은 '디지털 식별'에 기반한 정교한 추적이 특징이다. 때로는 집단별로 구별되는 방역 정책도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정교한 식별과 추적, 그리고 집단의 구별은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등 사회적 차별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또 생존의 위기 앞에서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집회시위의 권리가 계속하여 억압받고 있다. 집회의 참가자가 처벌받고 주최자가 구속되었으며, 감염병 예방법 자체가 확진자와 접촉자를 대체로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방역 정책은 늘 정확한 신원을 요구해 왔다. 디지털로 집적된 신용카드정보, 교통카드정보, 전자출입명부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토대로 본인의 실명을 확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가 방역 정책의 기반으로 사용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상 곳곳에서 항시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받는 상황은, 당사자 개인에게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및 사생활의 침해를 낳을 수 있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차별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정부 역학조사지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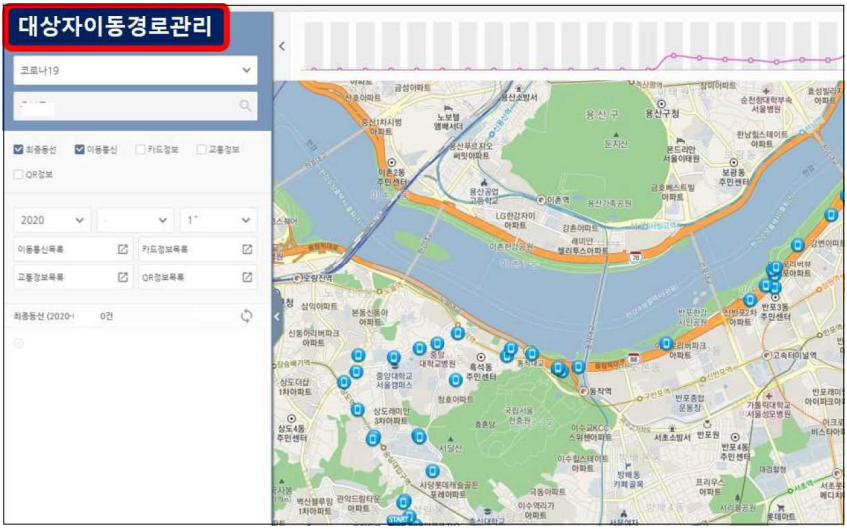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휴대전화 등으로 동선이 추적되고 공개된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 신상털기와 악성댓글이 만연했다[1]. 성소수자는 클럽 방문 동선이 알려져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적, 종교적 집회 참가자도 손쉽게 추적되었다.

우리 사회는 방역을 이유로 더욱 추적이 손쉬운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공공 정책들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소외나 차별이 당연해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어 정부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자가격리자(감염여부 미확인)는 시설에 강제입소해야 했다. 전자출입명부, 전자백신증명서 등 디지털 증명서는 본인 실명으로 발급받은 휴대전화에서만 작동한다. 휴대전화 기반 신원확인을 하지 못한 노숙인은 식당 출입을 거부당했고,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려는 홈리스는 전자회원증을 발급받고 소지하여야 한다.

1) 정보인권연구소 (2020). 코로나19와 정보인권. https://idr.jinbo.net/662.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누군가의 신원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구별하고 집단별로 분리된 정책을 손쉽게 집행할 수 있다. 등록되거나 식별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가 당연시 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공적마스크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서 이주민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이주노동자를 겨냥한 코로나 검사를 강제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백신접종을 보장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제외하였다. 홈리스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의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요구받는다. 특히 사회적 자원이 부족해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복지 수급 대상의 자격을 엄밀하게 평가하고 부정행위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방역 정책상 특정집단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고위험 직업군, 국가별 입국자, 8.15 광화문버스, OO교회 등 집단별로 구별하여 '능동감시' 대상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으로 구별할지, 그러한 구별이 꼭 필요한지 늘 성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교하게 사람을 식별하고 추적하며, 집단별로 구별하는 정책은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후로도 사회 곳곳에서 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정책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시설, 직장, 대중교통에 대한 출입과 이용이 백신증명서 소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천시가 개발 중인 지능형 역학시스템은 거리 CCTV 얼굴인식과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추적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도 거리에서 사람을 추적하는 데 이 기술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한다.

재난 위기에서 국가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정교한 식별과 추적, 집단을 구별하는 방역 정책은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사람을 항상 식별하고, 추적하고, 구별하는 정책이 방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항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인권적 대안이 가능할지는 아직 고민이며, 우리 사회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 이슈리포트는 성소수자, 이주민, 보건의료, 홈리스, 집회시위, 법률 분야에서 코로나19와 인권 문제를 고민해 온 한국의 활동가들이 추적 기반 방역 환경에서 경험한 현실에 대한 보고이다. 지구적 팬데믹 위기 속에도 인권을 보장하는 방역 정책과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국내외 인권활동가들과 문제 의식을 나누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 ◘

2021년 11월

정보인권연구소

성소수자 노출과 차별

이종걸*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

2020년 5월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하여 단독 보도했다. 이 기사는 40여 개 다른 보도에 인용되었다. 감염과 상관없는 특정 소수자 정체성을 명시한 것에 대한 인권단체 및 각계의 비판이 일자, 이후 해당 기사는 '게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에는 성소수자 감염자에 대한 혐오 낙인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였다. 이 사건 전에도 3월에 발생한 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 한명이 종로의 게이 커뮤니티 업소를 방문한 것이 게이 커뮤니티 내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우팅과 혐오의 문제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곧 혐오를 담은 댓글들과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당시 생활방역 전환과 연휴가 맞물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하고 있었고, 종로와 이태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왔던 역사가 있으며, 해당 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은 주목받지 못했다. 최초로 알려졌던 용인 확진자는 직장명이 모두 공개되었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가 거주하던 부천의 한

---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발간 참여.

아파트 출입구에 다른 입주자가 혐오글을 게시한 사건(아래 왼쪽)과 이태원클럽 정문이 '게이'라는 락카 칠로 훼손된 사건(아래 오른쪽)은 이 사건이 불러온 가장 극단적인 장면들 중 일부이다.

〈그림〉 아파트 출입구와 이태원클럽 정문의 혐오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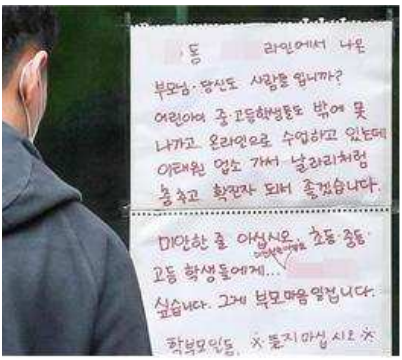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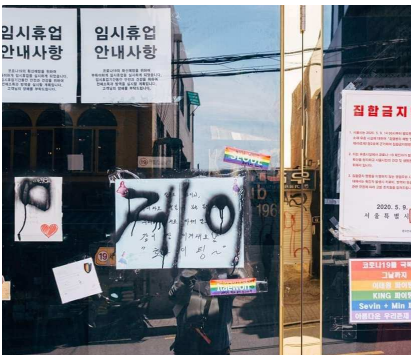

방역당국의 대응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HIV 인권단체들은 당시 상황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년간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HIV감염인 인권운동을 해온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코로나19 긴급 성소수자 대책본부'를 긴급하게 꾸리고 2020년 5~6월에 집중적인 활동을 하였다. 검진 대상으로 부상한 성소수자가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서울시는 예산을 투여해서 검진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의 초기 대응은 처참했다. 인천광역시는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사람에 전화해 인천지역 성소수자들의 연락처를 알고자 했고, 서울시 역시 에이즈예방단체에 성소수자들의 정보를 물어왔다. 성소수자들이 매주 모이는 자리에 시장이 직접 찾아가 검진 독려를 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들은 성소수자를 일반 시민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듯 했다. 그럼에도 대책본부는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을 만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의 원칙에서 대응할 것을 설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성소수자 무기명 검사가 실시되었고, 총리, 시장 등이 브리핑에서 '혐오와 차별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서울시의 기금을 들인 협력사업으로 커뮤니티에 검진 독려 홍보를 한 것도 성소수자 운동의 입장에서는 꽤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대책본부와 관계를 맺은 서울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시간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만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클럽 인근의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확진자 발생 전 2주간의 접속자 기록 1만여 건을 대량으로 가져갔다.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태원 방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방문 클럽을 노출하는 확진자 동선공개를 계속하여 성소수자들의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인권과 방역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방역당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했을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적인 책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

한편으로 문제적인 언론보도로 성소수자들이 아웃팅 피해를 입었거나, 성소수자 확진자가 직장 생활에서 피해를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일었다. 남성 게이 커뮤니티들의 공간인 휴게텔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또다시 일부 언론이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시도하였지만, 대책본부 등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인권운동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방역당국에서는 성소수자를 방역 성공을 위해 협조하는 주체로 구성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도 이르렀다.

인천 학원 강사 사건

한 인천 학원 강사는 이태원 집단감염 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구속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한 개인에게 감염병 전파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부과하였다. 성소수자였던 당사자는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노출하게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쉽사리 드러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들을 모두 삭제한 비난들이 쏟아졌다. 이 사람으로 인해 감염 전

파가 7차에까지 이르렀고 수십 명이 감염되었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으나 그 구체적인 과정과 인과관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이 계속된 상황은 좌절감을 주었다.

대책본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연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인권운동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선처해달라는 것뿐이었을지 고민이 남는다. 물론 이런 활동이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한 최선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형사처벌과 구상권을 통해 개별 확진자의 책임을 묻는 국가 앞에서 인권운동의 입장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사회적 비난을 넘어 형벌이 되어가는 상황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인권적 방역 정책을 제안하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인권의 원칙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관리할 때 정보인권 관점에서 논의되고 협력되었다면 정체성 노출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방역 정책의 인권적 개입이 가능했다면 자가격리나 코호트격리에 있어서도 전파차단의 효율성뿐 아니라 인권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방역과 인권을 매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항상 사후대처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담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역할은 차별조사와 구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에 인권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권담당 제도가 개입, 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차원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 차원에도 요구된다.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 사회적으로 소외된 낙인 집단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방역을 넘어 차별 철폐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5년 가까이 제정이 유예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한 2021년 연내에는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외국인과 이주민 차별과 배제

고기복*

외국인 체류 정보 수집 확대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한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 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하면서 체류 예정 숙소를 제시하고 입국하고 있었다. 더욱이 법무부 출입국은 2012년부터 외국인 범죄 발생 억제 및 사후 추적·관리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외교관, 17세 미만 외국인 등 일부 제외)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가 '시행령'으로부터 '법률'로 상향 규정되어 허위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개정법은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자동출입국심사에서뿐만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운영위원장.

보안검색과 출국심사 단계에서 외국인 생체정보는 체크인 단계부터 항공사가 무인 키오스크(KIOSK)를 통해 여권 및 생체정보를 법무부에 전송하고, 법무부는 출국요건 및 본인여부를 확인 후 탑승권 발권 허가를 결정하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에 이용되고 있다. 또 이렇게 수집된 외국인 생체정보는 2019년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생체인식기능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되었다.

이처럼 조밀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감시와 추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기에 더하여 모든 외국인의 체류 상황을 숙박업소를 통해 신고하게 한 것은, 역학조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해도 외국인만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이며,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는 발상이다. 외국인 숙박 신고제가 뜻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폭넓게 퍼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와 편견에 편승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법무부가 숙박신고를 받겠다고 하는 관광 등의 단기 체류자들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식별과 추적을 항구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봐야 한다.[1] 단기 방문자만이 아니라 향후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고,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기인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감염증 예방수칙과 의심 증상 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를 강화하고 의료진 배치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그 주무부처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자치단체가 되어야지 외국인 체류 관리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한 정부여당이 시민 기본권, 다문화사회, 인권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

1)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 외국인 입국자는 17,880,503명이었다. 2020년부터 1월부터 6월까지 입국자는 2,244,532명이었고, 2021년도는 6월 말 기준 453,373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0% 밖에 입국하지 않았다. 델타 변이 등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 입국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말까지 예상 입국자는 전반기 수준 혹은 그 이하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2019년 대비 5%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필수불가결한 외국인이 아닌 이상 입국하지 않는다(못한다)는 말과 같다고 봐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만 요구된 코로나 검사

지난 3월에 서울, 경기[2]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 벌금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그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은 해당 집단을 코로나 감염원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 행정명령은 차별적이었다. 더불어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월 2회 휴무가 일반적이고, 제조업 노동자들은 주말에 한해 휴무를 갖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고압적 행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감염병 발생 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었다.[3]

내국인과 달리 고용주로 하여금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이주노동자만 신규 채용하도록 한 부분은 내국인 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차별행위이자 과잉 행정이었다. 2020년 코로나 발발 초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공적 마스크조차 구입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고 재난지원금 차별을 당연시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빌미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통제 혹은 배제하고 강압적 행정력을 합리화하기에 바빴다.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주노동자 혹은 외국인들을 감염원 취급하는 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복되고 있다.

---

2) 2021년 6월 기준 등록외국인 1,097,247명의 거주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전체 59.8%인 656,555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들의 비율을 기계적으로 감안하면 약 80만 명이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벌금과 구상권 청구는 이주노동자만이 아니라 사실상 고용주를 압박하는 수단이다. 고용주들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휴일 PCR 검사를 요구했고, 이는 선별진료소의 혼잡을 가져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백신접종에서 배제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 보급에 있어 추가적인 부스터샷 접종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예약 정보를 취득하기도 쉽지 않고, 예약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4]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백신접종 접근성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상식과 달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현장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수시로 일어났다.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내국인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외국인을 열외시민 취급했고, 행정관서가 희생양을 필요로 할 때는 편의적으로 존재를 부각시켰다.[5] 코로나 발발 이후 감염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는 가운데, 특별히 이주민들은 감염원 취급을 받으며 혐오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방역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따질 때는 마치 아무 곳에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치부되기도 했다. 집단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 조치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했거나 여전히 진행형인 외국인 대상 전수조사 행정명령이 대표적 외국인 혐오 사례라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은 체류 자격에 따른 배제의 전형이다.

지난 7월 13일 경기도 화성시는 「(긴급)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예방백신 수요조사」라는 제목으로 자치단체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며 '재외동포비자(F4), 불법체류자 등 고용허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을

---

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에 따르면, 언제 백신접종이 가능한지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집단은 외항선원, 거리 노숙인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이다. 심지어 약 40만에 달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접종규모(통계)도 명시하지 않았다. 접종계획에 미등록 외국인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실상 미등록 외국인은 집단감염 발생 등에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접종에 있어서는 가장 후순위인 셈이다.

5) 2021년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198만(2019년 252만)명 중 미등록자는 391,471명(2020년 6월말 398,518명)으로 총 체류 외국인의 19.8%에 해당한다. 한국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PCR 검사 등의 과도한 행정명령을 미등록자들에게 강제하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제외하였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관리번호를 신청하여 백신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 수요조사 공문에서 보았듯이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다.

전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중 20%에 달하는 약 40만 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다. 집단면역을 추구하는 방역당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방역당국은 백신 물량 부족과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식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핑계로 대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행을 묵인한다면 방역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재난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에게 우선접종하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접종한다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한 인권방역 수칙이 있어야 한다.

방역 정책에서 추적 및 집단 관리의 문제

최홍조*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의 식별과 추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식별과 추적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발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존엄과 인권의 원칙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생각하면, '필요하다' 혹은 '불가피하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이 문제를 결론 짓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방역 정책에서 식별과 추적, 그리고 공권력 개입 – 혹은 인권의 유보 – 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담아보려 한다. 이 글은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쟁점을 제시하는 글에 더 가깝다.

식별과 추적의 대상은 누구인가?

감염병에서 격리라는 단어는 대중들에게 친숙하다. 하지만, 모든 격리가 다 같은 격리는 아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아픈 사람과 아플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이다. 아픈 사람은 소위 확진자를 말하고, 아플 수 있는 사람은 소위 접촉자를 말한다. 두 부류의 사람에게 권고하는 '격리'는 서로 다르다. 아픈 사람에게는 격리(isolation)를, 아플 수 있는 사람에게는 검역(quarantine)을 권고하는데, 우리는 이들 모두를 격리라 말한다. 글의 편의상 여기서는 두 용어를 구분한다. 격리는 감염된 사람(아픈 사람)을 건강한

* 시민건강연구소 활동가. 보건학 박사.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 발간 참여.

다른 이들과 분리하는 것이다. 검역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사람(아플 수 있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다른 이들과 분리하는 것이다. 굳이 두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 과정 – 격리와 검역 – 에 따라 방역 조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역학조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앞선 사람, 즉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만' 한다. 역학'조사'의 대상은 오직 아픈 사람이고, 아플 수 있는 사람은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역학조사의 핵심 목표는 접촉자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추가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접촉자가 있다면 몇 명인지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판단할지 아닐지 등의 판단이 역학조사에서 핵심이다. 아플 수 있는 사람은 역학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결과로 결정된다. 이들은 검역(소위 자가 격리)이 권고되고,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까지 분리가 필요하다.

역학조사에서 식별과 추적의 대상은 이제 분명하다. 바로 아픈 사람에 한정된 이야기다. 아플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식별과 추적의 정당성을 역학조사와 관련 지어 말하면 – 예를 들어, 접촉자에게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비난하는 것 – 거짓이다. 추가적인 식별과 추적 과정이 아플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하다. 아직 아픈 사람(확진자)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아플 수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접촉자 범위를 아픈 사람과 1미터 이내 15분 이상, 직접 신체 접촉, 개인보호구 없이 확진환자를 돌본 사람 등으로 제시한다. 까다로운 접촉자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감염병의심자', 즉 아플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식별과 추적을 정당화하고 있다. 역학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식별과 추적을 어떻게 판단할지 사회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식별과 추적은 언제 필요한가?

식별과 추적은 언제 필요한가? 이미 답을 제시했다. 아픈 사람의 역학조사

과정에 필요하다. 그리고 식별과 추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또 다른 아픈 사람, 혹은 아플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언론은 작년 코로나19 초기부터 소위 '10분 내 확진자 동선추적'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역설적으로 확진자들이 본인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역학조사의 출발선에 선 아픈 사람을 믿지 못할 아픈 사람으로, 캐내어야 할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관과 아픈 사람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역학조사관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한 보고서[1]에 따르면, 10분 내 확진자 동선추적은 역학조사의 출발선이 아니다. 대부분의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진술에 기초한다. 의도적으로 본인의 동선을 속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역학조사관과 확진자가 '협력'하여 기억의 조각을 찾아가는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동의에 기반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결국, 강제적인 식별과 추적이 역학조사에서 기본값이라는 인식은 하나의 권력이 되었고, 역학조사 과정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왜곡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동선공개 원칙의 변화 과정은 강제적 식별과 추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어떻게 권력으로 작동했는지 이해하기 좋은 사례다. 작년 10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이 나오기 까지, 최소한 3회 이상의 동선공개 지침 변경이 있었다. 과도한 정보공개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이 과도한 동선 공개를 유지했다. 작년 10월 불필요하고 과도한 동선공개를 금지하고, 역학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지침을 제시한지 시간이 적잖이 흘렀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동선이 공개되지 않아도 방역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대중은 이해한다. 인권을 중심에 두고 연대한 시민사회권력이 공권력만을 강조한 국가(혹은 지방정부)권력을 넘어선 사례다. 이 사례에는, 시민들이 동의에 기반을 둔 추적과 식별, 확진환자와의 협력적 역학조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방역이 더 우

1)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0).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 코로나19 시대 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 http://health.re.kr/?p=7069.

선하는 방역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담겨있다. 이제 질문은 '식별과 추적이 언제 필요한가'에서 '협력적 역학조사와 방역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방역을 위한 공권력 개입의 정당성은 어디까지인가?

방역 조치의 각 단계와 대상에 따라 공권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다. 정부는 아픈 사람(확진환자)과의 소통 과정인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한다. 일부 접촉자를 포함한 감염병의심자에게는 자가격리 위반이라는 법적 조치를 한다. 접촉자와 감염병의심자에게는 검사 행정명령 위반이라는 처벌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공권력은 방역 과정에 개입한다.

최근 한 보고서[2]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주요한 문제제기 중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원칙, 구상권 청구 등 엄벌주의 기조'를 지적했다. 또한, 2020년 2월 이후 2021년 6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확정 판결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원자료를 받아 필자가 재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심만 포함한 경우 전체 535건의 판결문에 603명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감염병의심자는 412명, 감염병 환자는 10명, 그 외의 경우는 182명이었다. 2021년 6월 1일 0시 발표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약 14만 명이다. 이들 중 역학조사 방해로 판결을 받은 사람 수의 비율은 0.0%(10명)이다. 검사 건수가 감염병의심자 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지만,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자가격리 위반(감염병의심자) 건수의 비율은 0.0%(412명)이다. 검사 행정명령 위반 처벌사례는 0건이었다.

판결 사례 분석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역학조사 방해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 (2021). 이슈리포트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의 사례는 전체 사례 중 매우 드물거나 거의 없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전체 감염병의심자 중 매우 드물거나 거의 없다. 검사 행정명령 위반은 전체 감염병의심자 중 매우 드물거나 거의 없다. 공권력 개입과 엄벌주의 원칙이 어떤 맥락에서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 방역을 위한 과정인지 묻고 따지고 이야기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역을 위해 필요한 수준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방역 과정에서 추적과 집단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식별과 추적 조치는 방역을 위해 필요한 수준과 범위를 넘는다. 그럼에도 사회적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자발적 협력을 통한 방역과정이 아닌 강제와 공권력을 강조하는 방역 정책이 우선한다. 이 힘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

홈리스 차별과 배제

형진*

복지의 공백, 방역의 과잉

한국 홈리스 정책의 특징을 말할 때, '시설 중심성'이란 개념을 거론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시설은 홈리스 정책 전반에 걸쳐 매우 독특하면서도 절대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홈리스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일한 경로이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는 법제도 자체가 시설을 기본값으로 삼아 설계되었기 때문인데, 실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정하는 이런저런 복지서비스 가운데 노숙인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 주거와 의료 같은 핵심서비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노숙인복지법」 상 모든 주거지원 서비스는 "노숙인 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으며, 의료지원의 대상은 "시설에 입소한 자"로 한정돼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설은 그 자체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작동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거리홈리스의 식량권(right to food) 보장 요구에 "거리노숙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늘리면 시설입소보다 거리를 더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립-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1]고 말하는 시공무원의 모습과 "시설입소 희망자"에

---

* 홈리스행동 활동가.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조사〉 발간 참여.

1) "노숙인 밥·잠자리 챙겨라" 인권위 권고…서울시 "대책 준비". 뉴스1 보도 (2021. 6. 2). https://www.news1.kr/articles/?4325105.

한해 식사를 제공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2]은 권리부정과 열등처우의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노숙인 시설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는 점에서 시설은 홈리스 정책의 한 부분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일반적인 원리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이처럼 시설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의 권리와 필요를 부차화했던 시설 중심의 홈리스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광범한 복지공백 상황을 초래하였다. 최소한의 방역지침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삶의 공간, 더욱 줄어든 밑바닥 일자리, 급식과 물품지원을 포함한 사적 부조의 중단은 사회서비스의 필요 증대로 이어졌지만, 시설을 중심에 둔 정책과 지원체계는 전체적인 판도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다. 오히려 사태에 대한 대응은 감염병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회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묻고, 디지털 방식의 문지기를 통해 부정을 식별하고, 지원기관의 문턱을 높이는 조치가 방역의 이름으로 자행됐다. 서울시 행정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 글은 이 일련의 조치들의 동기와 결과에 관한 보고이다.

서울역 실내급식장의 RFID 전자회원증 도입

2011년 「노숙인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급식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 급식지원 서비스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급식시설은 전국 4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생활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대다수 홈리스 당사자들은 민간단체와 종교기관이 제공하는 구호적 · 시혜적 성격의 급식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른바 '노숙인 급식대란'으로 이어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민간급식소가 잇달아 운영을 중단하면서 급식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지만,[3] 공급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수

2) 보건복지부 (2021).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3) 국회의원 강선우(더불어민주당)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실태'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전국 12곳의 공공 '연계' 급식소 가운데 절반

요를 장기적으로 감당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런 사정은 상대적으로 홈리스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던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상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대상자 선별'을 통해 급식수요를 제어하는 길을 택했다. 서울역 실내급식장(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의 이용자격 제한조치와 전자회원증 도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0년 거리급식 관행 근절을 목적으로 개소한 서울역 실내급식장은 시가 민간 · 종교기관에 장소를 제공하고 종교 · 민간기관이 사전 조리한 음식을 해당 장소로 가져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급식장'이라는 모호한 이름 역시 이 같은 특수한 운영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간 서울시는 서울역 실내급식장이 「노숙인복지법」 상 노숙인급식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다.[4]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시는 서울역 실내급식장의 이용대상을 「노숙인복지법」 상 '노숙인 등'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소 초기에는 거리홈리스만이 아닌 "쪽방거주자, 독거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행정의 성과로 홍보하기까지 하였다.[5]

이런 기류가 급변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역 실내급식장의 이용인원이 크게 증가하면서부터다. 2020년 9월초, 서울시는 "65세 이상은 급식 제공이 안 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서울역 실내급식장 외벽에 게재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자 "노숙인복지법이 정하는 '노숙인 등'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수정된 내용의 공지문을 다시 게재하였다. 이어 9월 중순에는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돌연 조식 제공을 중단하면서 노숙이력 조회와 노숙인

이상에서 하루 평균 급식 인원이 늘어났다. 심지어 기존 급식인원 대비 27배 폭증한 곳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선우 의원실 보도자료(2020. 10. 8.) 참조.

4)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급식시설을 통해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 운영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5) 서울역 거리급식 문화 바꾼'따스한 채움터'. 서울시 보도자료 (2010. 8. 18).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6379.

종합지원시스템(복지정보시스템) 등재, 사진 등록을 전제하는 전자회원증(RFID)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서울시 주무부서가 밝힌 조치의 명분은 방역관리의 강화였다. 이용자들이 수기식 방역명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진자 동선추적에 사용될 연락처(핸드폰)를 소지한 경우도 드물어 RFID 방식의 회원증 발급 외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었다. 시는 전자회원증을 통해 급식장의 밀집도와 동시 이용인원 문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역관리의 취약성을 이용자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단선적인 사고일 뿐이다. 애초 서울역 실내급식장의 방역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간급식 중단에 따른 반대급부로 이용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지 '수기명부 작성의 어려움' 따위와는 관계가 없다. 전자회원증의 도입이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노숙이력과 복지서비스 이용기록이 지원을 제한하거나 대상자를 거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자회원증은 정보시스템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이들의 서비스 이용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6]

더욱이 이용 대상을 제한하고 추적과 식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만이 급식장의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도 아니다. 오랜 대기시간과 높은 밀집도의 이면에는 홈리스가 이용 가능한 공공급식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행정은 그동안 민간에 과도하게 맡겨져 왔던 급식 부문에 대한 개입을 도모하고 서비스를 확대했어야 옳다. 이를테면 집단급식만을 고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화하며, 급식제공 횟수와 장소를 확대하여 서비스가 분산 제공되도록 하는 등의 사회정책적 접근이 디지털 기술 도입에 앞서 고려됐어야 한다.

---

6) 실제로 작년 7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일부 유형에 '노숙인'이 포함된 것을 일부 언론에서 문자 삼자, 행안부는 '노숙인'의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복지정보시스템을 조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전자회원증 도입 시도는 무산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급식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데, 그 이유로 시는 예산과 절차 그리고 "자립-보호의 균형"이라는 논리를 들었다. 바로 이 지점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놓인다. "사회정책에 입각한 대책은 그토록 많은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필요로 하면서, 왜 사회정책의 대상을 식별하고 선별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에 입각한 대책은 아무런 협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가?"

서울역 홈리스 집단감염 사태와 그 이후

2020년 12월, 서울시는 '노숙인 · 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제로 노숙인 응급잠자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7]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집단 밀집시설을 운영하는 건 오히려 위기를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하였고, 독립적인 위생설비를 갖춘 개별 주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응급잠자리 한 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조차 서울시는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정책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시는 언론을 통해 응급잠자리가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좀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그러는 새, 집단감염은 빠르게 확산하였고, 최종적으로 100여명의 확진자와 200여명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하였다. 사태 초기 서울시는 "노숙인의 마스크 착용 미흡"을 문제 삼았지만, 첫 확진자가 철저한 방역수칙을 요구받는 종사자였다는 점, 전파가 각 곳 응급잠자리를 중추 삼아 진행됐다는 점을 두루 고려할 때, '응급잠자리'라는 세팅 자체가 집단감염의 원인임은 자명했다.

주목할 것은 이 명백한 정책실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또 다시 기술적인 처방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집단감염 확산이 최고조에 이른 1월말,

---

7) 노숙인 응급잠자리는 매 혹한기마다 거리홈리스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 운영되는 시설로, 적게는 십여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면 및 위생공간을 공유하는 집단밀집시설이다.

시는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 통보자'만 관내 노숙인 지원기관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글 서두에서 밝혔듯 노숙인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는 복지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이 조치는 사실상 주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한 홈리스의 복지서비스 이용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7일 이내의 코로나19 검사결과지를 소유하지 않은 홈리스는 급식 이용, 병원 치료는 물론 복지사와의 상담조차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홈리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낮췄다. 서울역 무료급식장 이용자 수의 변화가 그 단적인 예다. 조치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1년 1월 급식장의 1식 평균 이용인원은 318.1명이었지만, 2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 이용인원은 107.9명으로 1월과 비교할 때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8)]

집단감염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운영을 잠정 중단했던 노숙인 시설은 다시 운영을 시작했고, 서울시는 폭염기를 앞두고 '응급잠자리'의 다른 판본인 무더위쉼터를 개소하였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7일 이내의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지참해야 하는 홈리스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서울역 무료급식장을 매일 같이 이용하는 김씨는, 이제 34번째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고 있다. 방역 강화를 통해 보호하려고 했던 대상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

8) 따스한채움터 홈페이지. http://www.chaeumteo.or.kr/ 참조.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과 참가자 추적

랑희*

2020년 2월 21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주요 도심을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2월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경찰청도 감염병 전파가 집회 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고시에 이어 전국 광역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집회금지 장소가 지정되었다. 2020년 6월 정부는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확산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적용했다.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중 '모임·행사'로 분류되었으나, 다른 사회활동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보다 항상 한 단계 높게 거리두기가 요구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회금지 장소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원 제한을 함께 부과했고, 특정 집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1]였던 시기(2020. 10. 12 ~ 11. 23)를 제외하고는 2021년 7월 전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었고,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한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었다.

---

* 인권운동공간 활/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발간 참여.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되지만, 집회에 대해서는 100인 이상 금지인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었다.

집회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2]에 의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호[3]를 적용해 이뤄진다.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시법 위반으로도 처벌된다.

집회 참가자 식별 - 추적 - 처벌 강화

그간 경찰이 불법집회의 수사와 처벌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은 주로 집회 현장 영상 채증과 휴대전화 기지국위치를 통해서였다. CCTV 영상, SNS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

코로나 확산 이후, 기존의 불법집회에 대한 수사에 더해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가자 전원에 대한 식별과 추적이 진행되었다. 특정기지국에 접속한 대량정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내역 조회, 집회참가자 명단을 통해 참가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경찰과 함께 추적하고 처벌한다. 방역당국은 이런 정보수집을 통한 참가자 추적이 확진자들의 정확한 감염경로와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추적된 참가자들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등과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았다.

---

2)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사례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교회 담임목사(전광훈)가 이끄는 단체를 비롯해 26개 단체의 정부 비판 서울 도심 집회가 8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감염 확산을 우려하며 집회 주최 단체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집회 강행 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과 확진자 발생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도 밝혔다. 법원이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2건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8월 15일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두 곳으로 몰렸다. 집회 장소에 밀집도가 높아졌고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집회 당일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59명으로 확인되었다.

8월 18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없는 집회 참가자에게 첫 확진 결과가 나왔고,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세버스 운전자와 인솔자, 버스회사 관계자에게는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서울시는 집회주최단체에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경찰·방역당국 요청으로 집회 당일 광화문 주변 기지국 접속자 5만 명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진단검사를 안내했고, 명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해 강제조사를 실시했고,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진단검사에 불응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고 벌금이 선고되었다.

2020년 8월 15일 노동자대회 사례

민주노총과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코로나 감염 확산의 우려로 규모를 축소하여 집회를 준비하였으나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8.15 민족자주대회'측은 실내 행사로 변경했으나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이 8월 15일 집회

장소 인근을 원천 봉쇄하였으나, 민주노총은 종각역으로 장소를 옮겨 참가자 1,9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약식으로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나눠주고 체온을 측정했다.

같은 날 인근 광화문에서 개최된 사랑제일교회 등의 집회에서 확진자가 확인되자 민주노총은 자발적으로 참가 조합원 전원의 검진 방침을 확정하고 결과를 취합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고 민주노총은 "이름과 나이, 주소 제출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8월 22일 민주노총 조합원 1인의 양성 판정이 확인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동통신사에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있었던 종각역 주변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요청했다. 9월 1일 민주노총은 참가자 99%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명단을 제출했다. 진단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2021년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사례

민주노총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여의도 일대 40개소에 각 9명씩 집회신고를 했고, 서울시와 영등포경찰서는 집회금지 통보를 했다. 7월 3일 경찰은 서울 도심에 213개 부대를 동원해 임시 검문소와 집회 차단을 위한 차벽(경찰버스 500여 대)과 펜스를 세웠다. 결국 노동자대회는 장소를 종로3가로 변경해서 8천 명이 약식으로 진행했다.

7월 16일~17일 집회 참석자 중 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고, 질병관리청은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7월 26일 방역당국은 양성판정을 받은 3명이 집회와 무관하며 지역 음식점에서 확진된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미 정치권과 언론은 노동자대회가 4차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비난하고 일부 언론은 확진자의 주거 지역도 노출했다. 7월 27일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 4,70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고 추가 확진자가 없다는 결과를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체포되어 9월 16일 구속기소되었다.

코로나 위기 모든 집회가 불법이 되었다

실외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하면 코로나 전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 그러나 광화문 집회에서의 감염 확산 경험은 집회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감염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추적이 필요하다는 대중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 등 정보수집과 추적은 이후 집회에서 확진자가 확인될 때마다 동일한 추적을 요구하게 했다. 그러나 집회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참가자 식별과 정보수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집회 제한과 금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집회가 필요한 사람들의 어려움도 커졌다. 불법이 될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최 측은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집회 참가자들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중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함께 감염병 의심자를 추적하고 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다. ◘

과잉 범죄화를 촉진하는 디지털 추적

서채완*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오로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행사되어야하는 것이지 행정 효율을 위해 인권을 부당히 제약하고 차별을 야기하도록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권한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주력해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인권의 실현보다는 개인의 불가침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대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추적 및 감시를 전제로 적극적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참고로 추적 및 감시기술을 활용한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조치는 코로나19에 '감염병환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감염병의심자'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는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상황에서는 사실상 누구든지 '감염병 의심자'가 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조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슈리포트 〈코로나19와 범죄화〉 집필 참여.

외에도 사람들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이른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형사적·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수히 이루어지는 강제조치에 비해 이를 수인해야만 하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민,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비전형 노동자 등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시혜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성소수자, 종교집단 등에게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 사생활의 유출 등에도 침묵하고 있다.

제재를 강화하는데 치중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제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개정은 강제조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조치 위반 시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며, 제재의 수준을 상향하는 것에 치중했다. 심도 있는 논의나 사람들의 참여 없이 개정은 이루어졌고, 이는 코로나19의 공포를 내세움으로써 정당화 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감염병을 대응하는 현행 법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을 엄밀히 통제하지 않고 있다. 비례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요건들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이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절차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의적으로 부당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허용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디지털기술이 감시와 추적을 위해 특별한 검증 없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에 도입·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감

시와 추적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활용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성이 없거나 어쩔 수 없이 강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까지도 식별이 가능하게 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수사기관에게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에 대한 형사적, 경제적 제재가 용이한 이러한 상황에서 관용과 인도주의가 아닌 무관용을 원칙으로 수립했다. 경중이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고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강제조치를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과잉범죄화의 문제점

국제인권법은 국가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입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어서는 안 되고, 제재는 인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재에 있어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에게 보다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국제인권법의 요청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법과 정책을 구축·집행하고 있다.

특히 형벌권이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위반으로 4,836명, 격리조치 위반으로 1,718명, 역학조사 방해로 278명, 기타 위반으로 144명, 총 6,976명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으며, 대부분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받고 있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전파매개'에 대한 처벌은 감염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초래하는 처벌로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566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가 격리 중에 20미터를 이탈하거나 7~9분 동안 이탈한 경우 등 감염병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없는 경미한 사례에 평균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이탈, 치료를 받기 위한 이탈, 생필품 구매를 위한 이탈, 출근지시로 인한 이탈, 범죄피해 신고를 위한 이탈 등 부득이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며, 격리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치매증상과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무관용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잉 범죄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판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제반사정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출근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이탈한 사람, 생필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탈한 사람, 생계를 위한 구직을 위해 이탈을 한 사람 등 격리나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취약한 사람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아가 처벌받은 사람들 중은 거의 모두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즉 감염병 확산의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과잉 범죄화를 촉진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감시와 추적

방역을 명목으로 도입된 디지털 기술은 그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도, 비례적이지 않더라도 코로나19라는 공포 아래 그 도입과 이용이 정당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며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해 엄밀한 검증 없이 감시와 추적, 그리고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기술에 의해 수집된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가 방역의 목

적만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수집된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는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취약한 사람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출입국 현황, CCTV 사진, 현장 사진, 기지국 교신 정보, 동선위치정보 분석 등은 기존에 처벌이 불가능했던 극히 경미한 이탈행위까지도 식별해내고 있다.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무관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형사적 제재는 그 자체로 차별적이거나 가혹한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 격리조치나 집합금지 등 대부분의 강제조치는 특히 적절한 주거 환경,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이 위반하기 쉽기 때문이다. 결국 경미한 이탈행위까지도 식별해내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시행은 정부와 수사기관의 무관용 원칙과 결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과잉 범죄화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활용을 통해 수집하는 위치정보 등 방대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이 방역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 그 자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한 프라이버시권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은 차별적이고 가혹한 처벌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제 필요

국제인권법은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단순한 국가의 접근가능성조차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간섭이고, 엄밀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국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부당한 수사, 프로파일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립된 기본원칙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접근가능성을 확대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감시와 추적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접근가능성을 엄밀히 규정하라는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나아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수집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대한 과잉 범죄화를 촉진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시, 추적, 식별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과잉 범죄화를 초래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 추적, 식별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